

가가호호 아이들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보건복지가족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련 FAQ 배포

1. 평소 우리부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도) 및 협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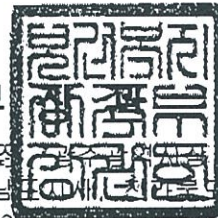
2. 우리 부(의료자원과)는 '비급여 비용 등의 고지·게시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10.1.29) 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중 국민들로부터 질의 빈도가 높은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와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대한 FAQ를 작성하여 귀 시(도) 및 협회에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FAQ 1부, 끝.



보건복지가족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안방병원협회



주무관 안상현 행정사무관 박창규 의료자원과장 선관 02/08
점윤순

협조자

시행 의료지원과-957 (2010. 02. 08.) 접수
우 110-793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7304 전송 02-2023-7333 / ash2300@korea.kr / 비공개(5)